【다올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①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③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 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자 및 그 가족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고 공유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계약 사항】

① 이용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계약목적과, 계약기간, 계약자의무, 계약의해지, 급여비용납부, 배상책임, 개인정보보호의무, 서명 등 포괄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②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③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1. 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의 급여제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장기요양급여비용 매년 변동)

2. 병원비, 일상 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기타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일상 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② 본인부담금
1.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2. 기초생활 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0%
3. 감경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③ 기타 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등 알 권리가 있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이용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 급여제공외행위의 요구를 하지 말아야할 의무가 있다.
5. 그 밖의 이용에 관한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6. 이용자의 월 급여이용 등 비용부담

【계약의 해제 및 절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에게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센터에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② 기관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한 경우
2.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종결을 원할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계약해지 절차
1.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이나 구두상으로 할 수 있다.
2.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한다.
3. 계약해지 처리된 후 다시 기관과 계약 시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5년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26년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인상률	8.95%	11.89%	2.86%	2.85%	2.71%
인상액	206,500	247,800	42,500	39,100	31,900

2026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① 방문요양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26년 수가	'26년 본인부담	수가 증감	본인부담 증감
30분	16,940	2,541	17,450	2,618	510	77
60분	24,580	3,687	25,320	3,798	740	111
90분	33,120	4,968	34,120	5,118	1,000	150
120분	42,160	6,324	43,430	6,515	1,270	191
150분	49,160	7,374	50,640	7,596	1,480	222
180분	55,350	8,303	57,020	8,553	1,670	250
210분	61,670	9,251	63,530	9,530	1,860	279
240분	68,030	10,205	70,080	10,512	2,050	307

② 방문목욕 • 방문간호

(단위 : 원)

구분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26년 수가	'26년 본인부담
방문목욕 / 차량이용(차량 내)	86,480	12,972	88,990	13,349
방문목욕 / 차량이용(가정 내)	77,970	11,696	80,230	12,035
방문목욕 / 차량 미 이용	48,690	7,304	50,100	7,515
방문간호 / 15분~30분 미만	41,710	6,257	42,880	6,432
방문간호 / 30분~60분 미만	52,310	7,847	53,770	8,066
방문간호 / 60분 이상	62,930	9,440	64,690	9,704